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관련지방세체납경험자를 중심으로-

Impact of Awareness Factors of Local Tax on Tax Compliance

이 상 봉* · 홍 성 선**

(Lee, Sang-Bong · Hong, Sung-Sun)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연구설계 및 가설설정
- IV. 실증분석
- V. 결론

I. 서 론

조세는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경제주체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정수행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조세부과에 있어 국세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유취득하는 사실에 부과징수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행위는 바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국민의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에 대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 한국조세연구원 파견연구원

한 납세순응을 다 갖게 하는 것이 지방세행정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으로서 매년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해당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다. 하지만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중에는 납세자 본인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는 납세자도 있어 납세자들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세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실례로 “재산세 1년세 2배 주민들 반발확산” (2006. 5. 30 동아일보), “1주택자도 보유세 최고 5배.....반발확산”(2007. 3. 16 국민일보), “투기도 안했는데 세금폭탄을 맞아야하느냐” 는 불만(2007. 3. 15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을 토로하는 등 일부 납세자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¹⁾. 또한 지난 2007년 3월 조세연구원의 전국의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세자의식과 세정개혁방향 보고서(2007. 3. 2)에 따르면 “우리나라 납세자 68%가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를 위하여 면담을 하는 중에도 부동산관련 재산세인 경우 납세자들은 재산가액이 변동이 없음에도 납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세 부담이 많아진 점 그리고 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택분재산세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방세담당 공무원들도 행정비용이 과다소요와 납세자들이 항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들이 납세순응의지를 약화시켜 조세의 납부기한을 어기거나 조세회피를 하고자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의 지방세체납현황자료를 보면 2006년도 말 지방세체납액이 3조2천억원 이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체납액에 대한 체납건수가 4천2백만건 이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지연납부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사료될 수 있는 조세체납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체납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체납경험납세자의 납세의식 영

1) 부동산관련보유세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과세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2005년도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토지분재산세로 변경하여 관할 지방자치내에서만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시가의 50%로 하여 과세하고 2006년에는 55%, 2007년도 60%, 2008년도 65%, 매년5%씩 인상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세제의 시의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납세의식의 개념과 지방세 체납

2.1.1. 납세의식의 개념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단히 복잡하고 행동결정요인 또한 많다. 납세자의 조세회피문제는 조세제도가 발생하면서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납세의식은 크게 조세회피(tax evasion)와 조세순응(tax compliance)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회피(tax evasion)는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못한 상태"이며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란 "국세청의 개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세무회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탈세를 줄이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있는 반면,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는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순기능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2. 지방세체납

조세체납은 조세회피의 일종이지만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납세기피 유형인 조세회피나 탈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이라고 한다(한국지방세연구회 2002). 또한 지방세법의하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납세고

지서를 탈부하였으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체납이라 한다. 실정법상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는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위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1.3. 선행연구의 검토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들은 납세자들이 세무행정 대한 만족감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순응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이종환(1995), 박병목(2000), 김동은(2003), 정재을(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이종환(1995)은 공정성인식과 납세성실성에 대한 조세지식의 영향을 측정하고 납세자들의 공정성 인식변화를 통하여 납세순응의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세지식의 유무는 납세성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납세자의 성실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조세에 대한 교육과정은 조세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증가시키며, 조세에 대한 공정성 인식변화는 납세성실성의 인식변화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다.

박병목(2000)은 납세도의(tax compliance) 의식수준이 조세부담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으로 설명하였다.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을 제외한 전체표본이 조세부담 공정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각 요인별 분석에서는 납세태도에 대한 요인은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세계인지도 요인에서는 전체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재을(2004)은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인 도덕발달수준과 통제원천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제내재론자와 외지론자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도덕발달(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세청에 의한 강압적인 의사전달(입장표명)은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피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실험적 분석모형과 실증적 분석모형을 선정한 뒤에 변수들을 선

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향을 분석하였다. 즉, 이들 연구들은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율과,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정부재정의 공정성, 세무행정의 공정성, 세율의 적정성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세 환경에 맞게 재설계를 하였고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자 중 불성실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납세의식 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문제 등을 찾아 사전에 지방세 체납을 차단하는 등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III.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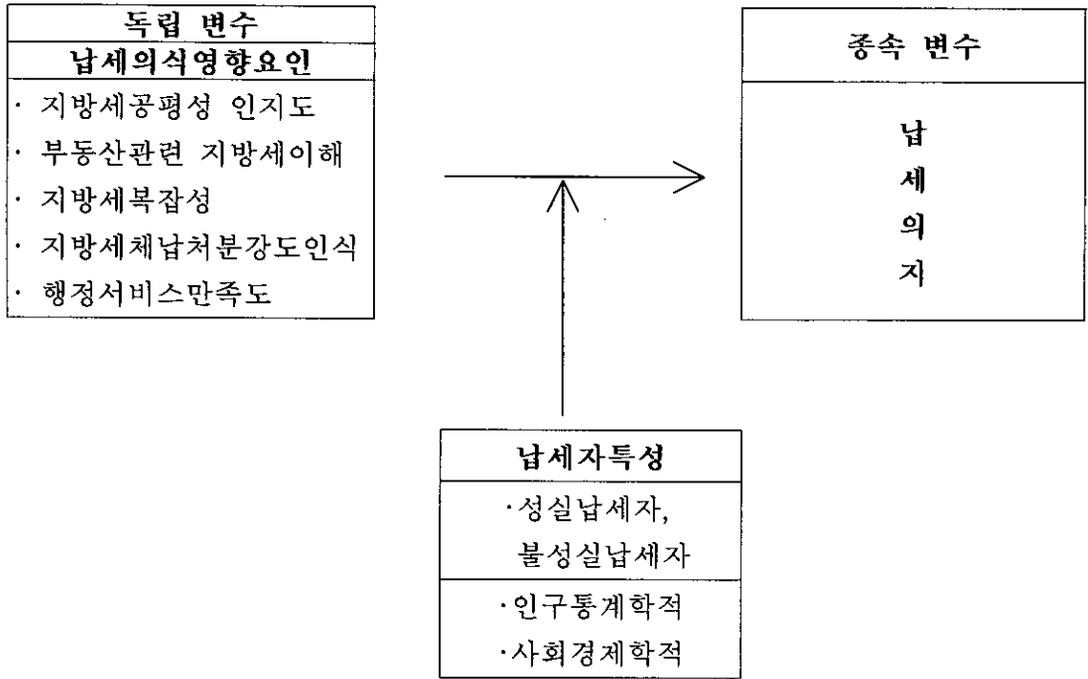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1. 연구모형

부동산관련 지방세체납경험자의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납세의식영향 이론 등 관련 문헌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과 설문지의 구성을 기술하였다.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납세의식영향요인의 인지정도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이 속한 문화적 환경과 조세제도, 경제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지정도와 납세의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납세의식개념이론을 기초로 선행 관련연구에서 제시된 납세의식영향 요인 중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았고 납세의식영향요인은 부동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지방세행정서비스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종속변수는 납세의지로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을 분류하였고 납세의지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그림3-1>를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계

3.1.2. 가설 설정

1) 가설 1(납세의식영향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납세자의 납세의식영향 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는 지방세공평성인 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은 납세자의 납세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납세태도, 세제인지도, 조세법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인식에 (+)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병목, 2000), 납세순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조세제도의 복잡성은 차이가 있다(심석무, 2004) 등 위의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영향요인별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 1>의 기본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 1-1>에서부터 <가설 1-5>까지 부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복잡성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설문지 구성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 요인별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선행관련연구의 설문과 기존 연구결과의 이론적인 부분을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은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별 변수의 설문구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부동산지방세제의 이해, 체납처분 강도에 대한인식, 지방세제공평성인지도, 지방세복잡성인식에 대한 변수를 선정 하였다.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독립변수로 ①지방세공평성 인지도, ②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③지방세복잡성, ④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⑤행정서비스만족도를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를 기본문항으로 하여 납세자의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지정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각 항목별 분류

구분	납세의식영향요인 현실적 명칭	문항번호
독립변수	1.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3, 11, 17, 25, 28
	2.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1, 6, 7, 15, 18
	3. 지방세복잡성	2, 12, 22, 23, 27
	4.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	4, 8, 14, 20, 21
	5. 행정서비스 만족도	5, 9, 10, 19, 26
종속변수	6. 성실납세의지	13, 16, 24, 29

2) 일반적인 특성의 설문구성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거주지 등 5개의 문항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납부수준, 부동산보유형태, 부동산 이외의 자산보유실태, 지방세납부시점, 체납이유 등 12개문항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정의

3.2.1. 납세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동산관련 지방세체납경험자의 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에는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행정서비스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성실납세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주된 매개 변수로 사용하였다.

1)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공평성인식은 현행지방세 납부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들의 실제 납부하면서 공평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논한다고 할 수 있다. 권영모(1994)는 조세공평성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즉 부자와 빈자,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제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변수는 납세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황이규(2002)는 조세공평성관련변수 설문에서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공평성 변수로 보아 연구하였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공평성에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공평성,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공평성, 공평한 지방세 납부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면서도 지방세에 대한 이해 즉 지방세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이다. 이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관련자들의 납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물건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 부과 된다는 점,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는 사실 등을 질문하였다. 남기원(2001)은 세금징수방법이외에도 납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세시스템에 대한 형평개념 또한 성실납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이에 부동산지방세제의 이해에 대한 5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지방세의 복잡성

지방세구조는 납세자 사이의 조세부담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공평한가의 문제로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즉 재산(부동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등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납세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세구조를 말한다.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조세순응에 상반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동산지방세제에 있어서도 토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가 높고 낮음에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남기원(2001)은 지나친 세밀성과 복잡한 계산방법들은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부동산관련 지방세제가 복잡한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구조의 복잡성,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복잡성, 세율의 복잡성 등 5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지방세체납(tax delinquency)은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탈세(tax evasion)나 조세회피(tax avoidance)와는 다른 개념이다(김의효, 2002). 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체납에 관한 정의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나 조세회피가 체납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조세납부의 의무를 피하는 것이지만, 체납과 달리 세금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조세회피는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김의효, 2002), 여기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한다 함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법적 행위를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정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한다.(김의효 2007) 즉, 정당하게 부과된 부동산지방세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압류된 재산의 공매, 급여압류, 형사고발 등 일련의 지방세징수에 대한 강제행위를 말한다. “벌칙의 강화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방지이론(deterrence theory)에서는 법적제재(legal sanctions), 사회적비난(social stigma), 죄책감(guilt theory) 등 세가지형태의 벌칙을 제시했다(황이규,2004).” 이와 관련 지방세체납처분의 강도에 따라 납부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이 강도와 행정적 불이익, 행정규제 등 변수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5)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정부행정이나 지방행정의 행정서비스는 납세 관련자의 납세의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조세납부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는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안중철, 2000).” 납세자들에게 행정서비스는 주민에게 일방적 혜택정도로 인식되어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타인에 비해 공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조세불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조세를 잘 내는 사람이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납세의지의 척도로서 중요하며, 납세관련자는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친절만족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만족, 세무상담의 순조로움 등 변수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6) 납세의지에 대한 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의 성실납세의지라 함은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지방세를 회피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정기분인 재산세인 경우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성실납부의식을 말한다.

7)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정의

납세자특성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을 사용 하였으며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납부수준, 보유동산보유형태, 부동산이외의 자산보유여부 등으로 하였다. 이들 납세자의 특성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으며,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 등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차적인 변수로 설정하였다.

3.3. 연구방법

3.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동산 지방세관련 지방세의 납세자들이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식 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표본은 전국의 납세자 중 직장인을 위주로 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인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경남, 경북, 충북, 강원 제주에서 체납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007년도 재산세 납부시점인 2007. 10. 25일부터 2008년 3월15일까지 총 2,000부를 발송하였으며 응답자는 572명이었다. 응답자 중 체납험이 있는 자(불성실납세자) 25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회수가 낮은 이유는 세금문제는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으로 설문지 작성에 대한 불신과 회피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작성을 기피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수행할 수 없어 제외시켰다.

3.3.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변수인 연령별, 재직기간별, 소득수준별, 지방세납부세액 등의 납세의식인식의 차이를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설계하였고,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신뢰성분석을 실시하고 납세의식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를 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가설검정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설문자료의 일반적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응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유효설문지 252부의 자료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 과 같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성별을 보면 남성이 167명(66.3%)이고 여성은 85명(33.7%)이다.

둘째, 연령은 30세 미만이 64명(25.4%), 30대가 111명(44%), 40대가 61명(24.2%), 50대 이상이 16명(6.3%)으로 구성되어있다.

셋째,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가 54명(21.4%), 대졸이 192명(76.2%), 대학원졸업이 6명(2.4%)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걸로 조사되었다.

넷째, 거주지별로 서울특별시가 38명(15.13%), 경기도가 22명(8.7%), 인천이 29명

(11.51%), 강원도가 18명(7.1%), 경상남도가 31명(12.3%), 경상북도가 23명(9.18%), 충청북도가 27명(10.7%), 대구가 27명(10.7%), 광주가 17명(6.7%), 제주도가 20명(7.9%)로 10개 시도에서 조사되었다.

다섯째, 재산세 납부수준을 보면 20만원미만이 32명(12.7%), 20만원~50만원 138명(54.8%), 50만원초과가 82명(32.5%)가 되고 있다.

여섯째, 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시점을 보면 5년전 부터가 140명(55.6%), 10년전부터가 80명(31.7%), 20년전부터가 28명(11.1%) 21년이전이 4명(1.6%)로 되어있어 10년이전으로 보면 87%이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 표본의 특성

사회경제학적 특성	소득수준	6천만원 이하	118	46.8
		6천만원 초과	134	52.2
	재산세납부 수준	20만원 미만	32	12.7
		20~50만원	138	54.8
		50만원 초과	82	32.5
	부동산 보유형태	주택 1채만 보유	114	45.2
		토지만 보유	52	20.6
		주택과 토지	58	23.0
		주택, 토지 이외	28	11.1
	부동산 이외 자산	부동산이외자산보유	216	85.7
		“ 미보유	36	14.3
	지방세 납부시점	1~5년전 부터	140	55.6
		6~10년전 부터	80	31.7
		11~20년전 부터	28	11.1
		21년전 이전	4	1.6
	체납이유	돈이 없어서	31	12.3
		세금 불만	18	7.1
		고지서 받지 못해서	68	27.0
		무관심	135	53.6

구 분		내 용	빈 도	퍼센트
인구통 계학적 특성	성별	남	167	66.3
		여	85	33.7
	혼인여부	기혼	163	64.7
		미혼	89	36.3
	연령별	20~30대	176	69.8
		40~50대	76	30.2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54	21.4
		대졸 이상	198	78.6
	거주지별	서울특별시	38	15.1
		경기도	22	8.7
		인천광역시	29	11.5
		강원도	18	7.1
		경상남도	31	12.3
		경상북도	23	9.1
충청북도		27	10.7	
대구광역시		27	10.7	
광주광역시		17	6.7	
제주도		20	7.9	
종사분야	일반회사원	112	44.4	
	공무원	95	37.7	
	자영업, 기타	45	17.9	

4.2.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4.2.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어떤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만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간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과학적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나 신뢰도가 낮으면 좋은 과학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측정의 가장 중요한 단면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모은 신뢰성 계수는 <표 4-2>와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Nunnally(197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납세의식영향요인 전체는 .777, 지방세공평성인지도는 .750, 부동산관련지방세이해 .809, 지방세복잡성 .701,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796, 행정서비스만족도 .813이고 종속변수인 납세의지가 .816으로 모두가 0.6이상이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표4-2>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변 수	최초항목수 (문항번호)	최종항목수 (문항번호)	Cronbach's a
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독립변수)	29	27	.777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5(3,11,17,25,28)	5(3,11,17,25,28)	.750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5(1,6,7,15,18)	5(1,6,7,15,18)	.809
지방세 복잡성	5(2,12,22,23,27)	5(2,12,22,23,27)	.701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5(4,8,14,20,21)	5(4,8,14,20,21)	.796
행정서비스 만족도	5(5,9,10,19,26)	3(9,10,19)	.813
납세의지(종속변수)	4(13,16,24,29)	4(13,16,24,29)	.816

4.2.2. 타당성 분석

타당성 검증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대상의 상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납세의식영향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차원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 항목에 대한 여러 항목들 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분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요성을 찾아내어 몇 개의 요인 군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최초의 요인행렬을 주성분 분석법으로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도구는 대부분 기존문헌에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들이나 문장의 의미가 응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의식 영향요인 타당성 검증결과는 <표4-3>에 나타나 있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타당성 검증결과 전체분산의 62.12를 설명하고 있다. 각 항목들의 요인 판단기준은 0.5기준으로 요인적재량이 그 이상인 경우는 포함시키고 미만인 경우는 제외시켰다. 먼저 전체변수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요인 1은 지방세법의 공정성, 부동산 관련지방세 납부가 공평한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세공평성인지도라 하였고, 요인 2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식을 묻는 것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이해로 하였으며, 요인 3은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로 하였다.

<표4-3> 납세의식 영향요인 타당성 검증결과

	성 분					
	공평성	이해도	납세의지	복잡성	체납처분	만족도
A11_공평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함	0.746	-0.088	0.178	0.054	0.094	0.123
A28_현재의 지방세법구조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함	0.741	0.228	0.019	-0.094	0.187	0.086
A25_부동산관련 지방세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함	0.7	0.11	0.054	-0.128	0.215	0.169
A3_부동산관련 재산세 부과가 공평하다고 생각함	0.659	0.143	0.014	-0.126	0.137	0.215
A17_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평하다고 생각함	0.633	0.214	0.101	-0.157	0.178	0.262
A26_지방세무행정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0.579	0.338	0.07	-0.133	0.055	0.458
A7_과세물건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0.111	0.76	0.238	0.041	-0.039	0.156
A6_재산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으로써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음	0.047	0.721	0.156	0.006	0.107	0.222
A1_토지/건축물/주택/선박의 재산세 부과를 알고 있음	0.051	0.669	0.217	0.053	-0.031	0.085
A18_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0.285	0.622	0.37	0.024	-0.124	0.02
A15_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음	0.325	0.613	0.148	-0.047	0.06	0.203
A24_부동산관련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할 것임	0.084	0.215	0.85	-0.012	-0.079	0.068
A16_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할 것임	0.055	0.173	0.834	0.025	6.80E-05	0.164
A13_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것임	0.051	0.233	0.796	0.023	-0.109	0.011
A29_세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임	0.132	0.234	0.744	0.026	-0.049	0.063
A23_재산세가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세율이 달라 복잡하다고 생각함	-0.082	-0.027	0.13	0.82	-0.031	0.07
A22_부동산관련 재산세법 관련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복잡하다고 생각함	-0.244	-0.198	0.038	0.729	0.005	0.064

A12_부동산관련 지방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함	0.045	0.088	0.008	0.726	-0.05	-0.181
A2_지방세법 구조가 복잡하다고 생각함	0.07	0.194	-0.092	0.708	-0.05	-0.239
A27_부동산관련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복잡하다고 생각함	-0.191	-0.016	-0.026	0.682	0.067	0.07
A20_지방세체납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엄격하다고 생각함	0.207	0.129	-0.026	-0.004	0.802	-0.002
A21_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강력하다고 생각함	0.131	0.033	-0.006	-0.013	0.752	-0.161
A4_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분이 강하다고 생각함	0.14	-0.077	-0.102	0.014	0.711	0.164
A14_지방세체납처분은 국세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함	-0.019	-0.141	-0.032	0.039	0.634	0.016
A8_고의적으로 체납시킨 사람은 행정적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함	0.232	0.138	-0.072	-0.11	0.629	0.138
A9_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친절에 만족한다고 생각함	0.428	0.252	0.084	-0.041	-0.021	0.741
A10_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생각함	0.428	0.219	0.079	-0.031	0.042	0.728
A19_세무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함	0.289	0.456	0.2	-0.142	0.087	0.543
A5_지방세무행정을 함에 있어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0.341	0.245	0.172	-0.031	0.084	0.464
설명량	13.132	11.279	10.586	9.757	9.437	7.927
누적설명량	13.132	24.412	34.998	44.755	54.193	62.12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있는베리맥스.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b체납경험여부=있다

요인 4는 지방세제의 관련 규정 등의 복잡성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지방세복잡성으로 하였고, 요인 5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성실납부자와의 차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으로 하였으며 요인 6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친절, 지방자치단체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행정서비스만족도로 하였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의 경우 5번 문항(나는 지방세무행정을 함에 있어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함)의 경우는 요인적재량이 0.464로 제외 시켰으며, 26번문항(지방세무행정의 납세자편의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함) 역시도 요인적재량이 0.5이하인 0.458이어서 제외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는 당초(5개 문항)와 달리 3개 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상관관계 분석

4.3.1. 납세의지와 의 납세의식영향요인과의 상관분석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해 납세의지와 의 영향관계 분석에 앞서 상관

관계를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4-4> 납세의식영향 요인과 성실납세의지 변인의 상관분석표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지방세 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지방세체납 처분강도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공평성인지도	1					
지방세제의 이해	.307(**)	1				
지방세복잡성	-0.097	0.018	1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에 대한 인식	.258(**)	-.175(**)	0.041	1		
행정서비스만족도	.605(**)	.489(**)	-.137(*)	0.115	1	
성실납세의지	.186(**)	.364(**)	0.12	-.199(**)	.258(**)	1
	0.003	0	0.058	0.002	0	

** p> 0.01 * p>0.05

전체적으로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4개 요인이 95%이상의 신뢰수준에서 성실납세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복잡성(r=.12)요인은 95%이상의 신뢰수준에서 성실납세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납세의식영향요인과 성실납세의지와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변수와 성실납세의지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높아지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제의 이해의 경우는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복잡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의 경우에는 -0.199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음의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직장인을 위주로 하다보니 체납처분강도인식은 낮으나 납세의지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는 0.258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분석결과 및 논의

4.4.1. 가설검정

1) 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단순 회귀분석

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위한 단순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4-5>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35$, $p<.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918	0.783		7.562	0.000
	공평성인지도	0.151	0.05	0.186	2.995	0.003**

R 제곱(.035) F (8.973) 유의확률(.003)**

a종속변수:성실납세의지

<표4-5>에서 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는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의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건물시가의 형평성문제(주택은 주택가액을 고시하고 있으나 상가 등은 미고시)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도 표준지가 등의 결정에서도 좀더 공정한 가액이 결정되도록 해야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도 신고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납세자편의를 위한 지방세정의 부단한 노력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는 표<4-6>과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133$,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184	0.513		10.105	0.000
	지방세제의 이해	0.259	0.042	0.364	6.161	0.000***

R 제곱(.133) F (37.959) 유의확률(.000)***

a종속변수:성실납세의지

<표4-6>에서 지방세제 이해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지방세납세의지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자들에 대한 지방세제의 과세내용을 자치단체별로 현수막 등의 홍보방법 등의 소극적 홍보에서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하여야하며, 지방세납세자들에게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한 안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세복잡성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복잡성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15$,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지방세복잡성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6.77	0.773		8.756	0.000
	지방세복잡성	0.119	0.063	0.12	1.907	0.058

R 제곱(.015) F (3.637) 유의확률(.058)

a종속변수:성실납세의지

4)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단순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4$, $p<.01$ 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8> 지방세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0.643	0.773		13.77	0.000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0.149	0.046	-0.199	-3.207	0.002**

R 제곱(.04) F (10.284) 유의확률(.002)**

체납처분강도인식과 납세의지와 상관계수가 역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결과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체납경험자들의 경우 직장인 위주로 하여 비교적 납부의식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응답자들이 체납처분강도는 낮게 인식하는 반면 조세납세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5)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67$,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866	0.577		10.159	0.000
	행정서비스만족도	0.278	0.066	0.258	4.22	0.000***

R 제곱(.067) F (17.811) 유의확률(.000)***

<표4-9>행정서비스 만족도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이는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행정서비스 강화와 세무행정서비스를 현재보다 납세자들의 피부에 맞는 납세편의시책마련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서교부방법의 개선(전자우편) 과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의 제도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5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4.2 납세의식영향 요인들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

납세의식영향 요인들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10>과 같다.

<표4-10> 납세의식 영향요인들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69	1.231		3.792	0.000
공평성인지도	0.07	0.061	0.085	1.142	0.255
지방세제의 이해	0.168	0.049	0.238	3.419	0.001**
지방세복잡성	0.151	0.058	0.152	2.58	0.01*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0.15	0.047	-0.203	-3.228	0.001**
행정서비스만족도	0.136	0.085	0.127	1.597	0.112

R 제곱(.191) F (11.43) 유의확률(.000)***

전체 회귀식은 ($R^2=.191$, $F=11.43$,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9로 성실 납세의지의 19.1%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세제의 이해의 경우 B가 0.168이고 t값이 3.419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방세제의 이해, 즉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지식이 높으면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에게 관련 세제의 변경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예상세액 등을 미리 통지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복잡성의 경우는 B가 0.151이고, t값이 2.58로 유의수준 0.01에서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주로 직장인과 공무원 등을 표본 대상으로 하다보니 지방세제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지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를 보면 B가 -0.15이고 t가 -3.228로 유의수준 0.01에서 음(-)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체납처분강도인식은 낮으나 납세의지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연구대상자들이 체납처분강도 인식을 낮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등을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경우도 1억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출국금지 등에서도 현행제도보다 강화된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복잡성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4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5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V. 결 론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지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납세자의 행동적 효과가 반영되어진 부동산관련 지방세시스템의 납세자편의와 효율성 있는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성실 납세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는 사회상황 그리고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이해집단별로 서로 이율배반적, 아전인수 격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다수가 동의하는 새 구조의 운영은 지방정부의 커다란 편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관한 5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이들이 성실납부 또는 지방세 성실납부의지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52명의 설문지 자료를 가지고 1개의 가설과 그에 따른 5개의 세부가설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면 납세의지도 높아지므로 공평한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자에 대한 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실납부자와의 불성실납부자간의 차별화 등으로 공평한 세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납세의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면 납세자에게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세복잡성에 대한 납세의지의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이 지방세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세제가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의지가 역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세제의 단순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의 폐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구조를 좀더 단순하게 하아야 한다.

넷째, 지방세체납처분에 대한 강도인식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본 결과 현재의 지방세체납처분을 행정제재 등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높으면 성실납세의지가 높아지므로 지방세 행정에 있어서 납세편의도모 및 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의 방법이 갖는 질적 변수측정의 한계점을 들 수 있고, 종합부동세의 신설내용 반영이라든가 과세표준적용비율이 높아지는 점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들의 지각내지 인지수준을 근거로 한 주관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대상, 시기, 방법, 납부자의 태도 등에 의해 편의를 지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부동산관련 체납경험자 중 직장인 등 비교적 성실납세에 가까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향후의 연구는 실제체납자 중 고질체납자 등 1억 이상의 체납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 집단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인애, “실학파의 조세사상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 김공박, “재산보유과표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남호, “전북지역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 강민구, “지방세 세원배분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공평성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 남기원,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 문광주, “부동산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 안중철, “납세관련자의 조세공평성인식에관한 실증적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여용범,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의식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 이범관, “조세회피행위의 성실납세 유도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9
- 전동훈, “재산세부담의 공평성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9
- 최근주,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